



등록번호	20241748
최초등록일	2024-12-27
최종등록일	2024-12-27

[향택] 정보공개서

향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향택

< 주의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0-16 (동문동)
상담 전화	010-9473-1503
대표 E-mail	hyangtek@naver.com
담당부서	프랜차이즈본부 010-9473-1503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5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본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9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의 선고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0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8) 가맹금 분납 제도	
2. 영업중의 부담	
1) 비용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7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1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3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6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8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 기준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향택	향택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0-16 (동문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5.05.	강석형	010-9473-1503	-
	사업자등록번호	833-46-00844	법인등록번호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 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영업표지)	향택	
상 호	향택 000점	
상표	향택	◆ 상표 등록 번호: 4021051710000 (등록일자: 2023.10.31)
로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합계	부채합계	자본합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50,667	217	50,450	92,349	-11,660	-10,550
2023년	52,232	4,691	47,541	225,441	30,072	33,09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2)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강석형	대표	2022.05. ~ 현재	향택 대표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동안 [향택]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	------	------------------------	----------------	----------------	-----------------------------

향택	사용권	출원: 2023.06.09. 등록: 2023.10.31.	출원 4020230101356 등록 4021051710000	강석형	2033.10.31.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 가맹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위해 위 상표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 및 사용
-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영업을 위하여 위 상표를 이용
- 기타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상표의 사용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향택]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당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일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5월 5일)

2. [향택]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향택	향택	강석형	2022.05.05. ~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0-16 (동문동)

3. [향택]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향택	한식	삼치곤드레밥, 가지된장덮밥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0	0	0	1	0	1	1	0	1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1	0	1	1	0	1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한식의 다양한 맛과 풍요, 아늑하고 건강한 시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택]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6. [향택]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향택]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12월말 현재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0	해당 없음						
서울	0	”						

부산	0	〃						
대구	0	〃						
인천	0	〃						
광주	0	〃						
대전	0	〃						
울산	0	〃						
세종	0	〃						
경기	0	〃						
강원	0	〃						
충북	0	〃						
충남	0	〃						
전북	0	〃						
전남	0	〃						
경북	0	〃						
경남	0	〃						
제주	0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향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 일)
해당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향택] 가맹점 관리를 위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향택]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해당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범어동지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0 동신빌딩 1층	1599-9999

귀하는 별도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KB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은 당사에서 별도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귀하는 또한 KB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없음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선고 내용

				범죄사실	
해당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향택]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차, 별도 공사 및 구매 사항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영업지역, 점포의 위치, 구조 및 규모, 영업 시작까지의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9,800				
가입비	13,2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해 비용 소요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손해금액을 공제 후 반환
신규 교육비	6,600	계약 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준비 등에 비용 소요	

2) 계약이행보증금

한식의 다양한 맛과 풍요, 아늑하고 건강한 시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택]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계약상 금전 미지급, 가맹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21,800	
가입비	13,200	
신규교육비	6,6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VAT 없음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금액	3.3㎡당			
합계		77,900	3,116			82.5㎡(25평) 기준
인테리어	자율 선정	41,250	1,650	별도협의	별도협의	82.5㎡(25평)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 부담
간판	자율 선정	3,300		별도협의	별도협의	전면간판, 사업장에 따라 변동됨
주방 설비 및 집기	자율 선정	19,800	792	별도협의	별도협의	작업대, 싱크대, 냉장고, 가스버너, 그릇과 집기 등

홀비품	자율 선정	8,800		별도협의	별도협의	POS기, 의탁자, 기타비품
영업물품	자율 선정	1,750		별도협의	별도협의	메뉴판, 인쇄물 등
초도상품	자율 선정	3,000		별도협의	별도협의	식자재 등

※ 인테리어, 간판, POS기 및 메뉴판 등은 당사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설치 또는 제작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별도 구매 및 공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 구매사항: 음향기기, 냉난방기, 순간온수기, 소방기구 등

** 별도 공사사항: 철거, 급배수, 전기증설, 소방, 화장실, 외부 확장 덕트, 도시가스설비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며, 입지 선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① 상담 및 입점 예정지 파악 ② 현장 조사 및 상권 분석 ③ 최적의 입지 선정

점포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희망자에 있습니다. 즉 점포 양수에 대한 계약과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해 점포 개발 업무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상권분석 등에 대한 자문은 입지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로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귀하가 [향택]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와 물품 등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가맹금 분납 제도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판촉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편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지급금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2.75%(부가세 포함)	익월 5일	반환 없음	가맹점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	
상품(행사) 광고비 부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25%, 전체가맹점 75%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계획 취소 시	광고비로 사용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편의 참조
상품(행사) + 가맹점 모집 광고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전체가맹점 50%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계획 취소 시	광고비로 사용	

분담금			3일내			
전국(지역)단 위 관촉비 분담금	가맹본부	항목별 실비부담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계획 취소 시	관촉물 제작 등에 사용	기념품, 현수막, 전단지 등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	자율 선정	실비부담	협의 결정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 선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결정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편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향택] 가맹사업 및 점포의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할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귀하는 가맹본부의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감독·시정권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계약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입비 추가 부

답은 없습니다. 단, 계약 연장 시 인테리어 전체 또는 부분 리모델링, 장비 교체, 외·내부 사인물 수정 등 필요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입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가입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가입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향택]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귀하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양수인은 신규교육 참석과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점포의 영업

및 운영을 중지,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및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비품 등 영업 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1일당 이십만원(₩200,000)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철거와 제거 및 반환 비용은 계약이 만료 혹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상기 사항과 별도로 계약 종료 시에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면, 이동저장장치, 전산자료, 홍보물, 각종 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는 즉시 가맹본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반품이 안됨을 알려드리며, 만약 특정 물품의 과다 재고로 소진이 불가능하고 반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정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부분 반품이 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향택]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인테리어, 간판 및 메뉴판 등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시공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재료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단위(규격)	공급가격(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거래 당사자)
			상한	하한	
1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향택]을 시작하거나 경영 중에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향택]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 2) 당사가 [향택]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준수 여부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MAIN	육회비빔밥 삼치곤드레밥 돼지곰탕 가지된장덮밥 청어알비빔면	강제사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계약 해지
SPECIAL	한판갈비			
DRINK	코카콜라 제로콜라 스프라이트 클라우드생			

협의로 정하는 사항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의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유사 경쟁업체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	제공 되는 모든 품목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육회비빔밥: 14,000원 - 삼치곤드레밥: 13,000원 - 돼지곰탕: 11,000원	권장 가격 변동 시 별도(서면, 카톡 등) 통보	2024년 12월 기준

• 가지된장덮밥: 11,000원 • 청어알비빔면: 11,000원 • 한판갈비: 9,000원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비빔밥 또는 덮밥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	향택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1km당 1점포 원칙하에 행정구역,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리, 상권의 특성, 점포 앞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경계선은 불포함)

단, 영업지역 안에 존재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역사, 터미널, 대학교 등의 특수 공간과 장소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향택]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한식의 다양한 맛과 풍요, 아늑하고 건강한 시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택]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In-shop(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의 내부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임대인의 MD개편 등의 사유로 당사와 무관하게 점포의 이전, 리뉴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향택]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전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가맹본부와의 거래상 또는 계약상 채무를 모두 변제
2. 기타 당사와 협의된 사항 이행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비고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참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향택]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5)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개월 유예기간 경과 후 해지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 사유	비고
1. 당사의 영업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가입비, 교육비, 물품대금, 시설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의 필수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운영사항 위반 가. 당사의 가맹점 평가 리스트에 의한 경고조치 등을 받은 경우 나.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메뉴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을 넘겨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참조

라. 불량한 점포시설, 주방기기 등의 교체 요구에 불응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마. 가맹점 근무자가 당사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불량, 슬리퍼 착용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소비자 클레임 발생 가.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여 당사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 등이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6. 판촉·광고 활동 위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판촉·광고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광고물 제작 시 당사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인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향택]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정책을 거부 또는 철회하라고 선동하는 경우 10.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등으로 당사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의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당사의 가맹사업 장애를 초래한 경우 13. 당사와 협의 없이 상품의 판매가격을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하여 판매함으로써 브랜드의 통일성을 해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재료 등을 가맹점 운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당사와 합의된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임의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6. 기타 가맹계약 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② 즉시 해지 가능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비고
------------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서 참조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과 신규교육 참석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후의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과 신규교육을 참석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상속의 경우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속인 등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부담과 교육을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운영권 외부 위탁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당사 위탁인 경우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및 해지 후 2년 동안은 귀하가 경업금지 되는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향택]과 동일·유사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비빔밥, 덮밥, 탕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한식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프랜차이즈본부

또한 귀하는 [향택] 계약과 경영상 알게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이를 사용 및 활용하여 가맹점 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은 협의 결정하나,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①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특별한 사정으로 2일 이상 5일 이하 연속하여 휴업 시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고 6일 이상 장기간 휴업할 경우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여부	점주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영업장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자	비고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프랜차이즈 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향택]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행사	상품(행사) 광고	25%	75% (가맹점 전분기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집행내역 통보 ※ 광고행사는 가맹점 50% 이상, 판촉행사는 가맹점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함 ☞ 기준 이상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대중매체 광고
	상품(행사)+가맹점모집광고	50%	50% (가맹점 전분기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판촉 행사	할인비용, 멤버십 포인트, 판촉물 제공 등	통일적 판촉행사를 위한 디자인 제작 등 판촉기획 비용	상품의 할인·포인트 비용,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비용 및 현수막·전단·카다로그 제작·배포 비용 등		이벤트 행사 등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당사와 사전 협의 후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조리(구매)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및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와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입비(IV-1-1)의 30%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가입비(IV-1-1)의 50%
- 계약 체결 후 7일 초과: 가입비(IV-1-1)의 70%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3/4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비용은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소요비용)
합계		55	
가맹희망자 문의	·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5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곳 이하 현황 포함) · 가맹계약서 제공	D-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상권분석, 후보입지 선정 · 후보입지 조건 검토 및 입지 확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D-45~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지정은행에 가입비, 교육비 등 예치	D-4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8~37(2일)	
현장공사 착수	· 인테리어공사 등 실시	D-36~2(25일)	
신규교육 실시	· 점포운영 등 교육 실시	D-36~2(30일)	
집기 등 설치	· 홀비품 등 설치	D-10~2(5일)	
현장교육 실시	· 직원 현장 파견 후 교육 실시	D-2~0day(1일)	
가맹점 개점	·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불가한 경우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	가맹점 오픈 시 지원인력 파견	가맹점 오픈 시	오픈일		
판촉지원	가맹점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인쇄물 등 지원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별도의 계획 수립		소요되는 비용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으로 하는 경영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조리,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가맹점 부담	

	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향택]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용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향택]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및 기간	필수교육 여부
신규교육		- 메뉴 조리 - 고객응대 요령 - 매장운영 방법 등	이론 및 실습	영업개시 전, 30일(교육 15일, 실습 15일)	○
개점후교육	보수교육	매장운영 방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에 따라 다름	×
	신메뉴교육	메뉴 조리 등			
	행사메뉴교육	메뉴 조리 등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향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 일수	교육대상자	비용	비고
신규교육		30일(교육 15일, 실습 15일)	가맹점사업자 혹은 당사의 승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정인	6,600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개점후 교육	보수교육	1일		220	
	신메뉴교육				
	행사메뉴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 당사자 외 직원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한식의 다양한 맛과 풍요, 아늑하고 건강한 시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택]**

기한 내 상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개점할 수 없고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구	향택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0-16 (동문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0개월	2022. 05. 05. 개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비고
225,441	국세청 신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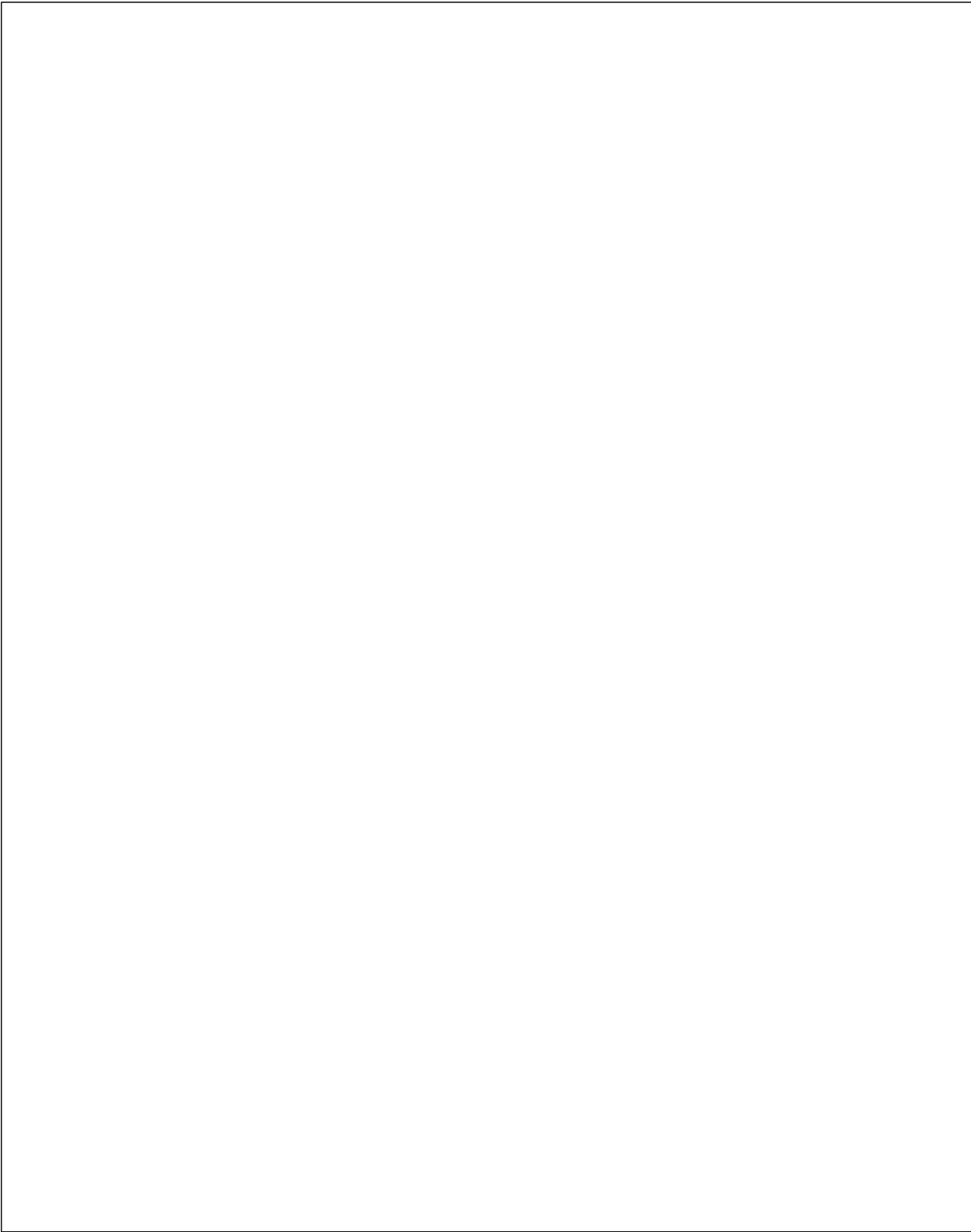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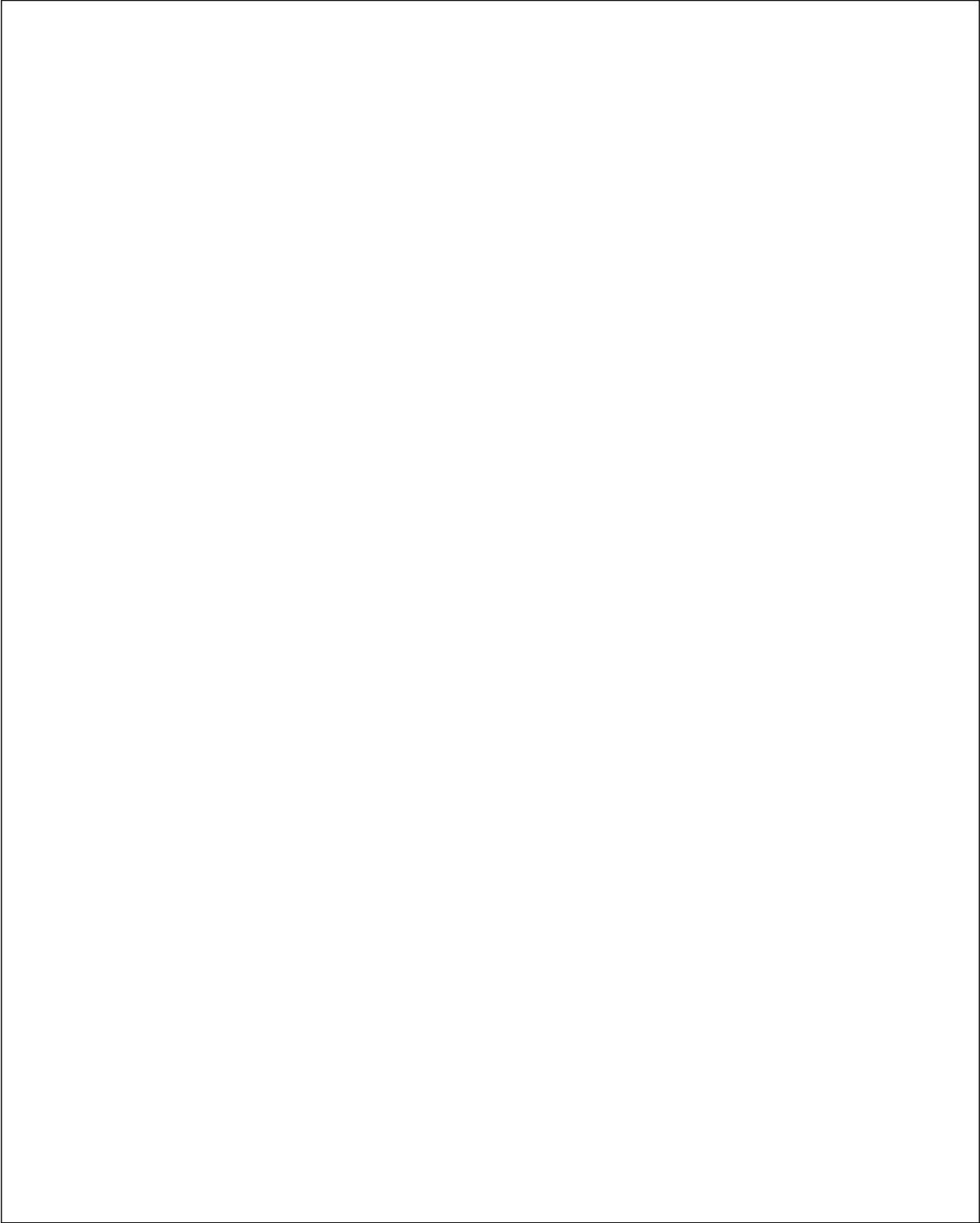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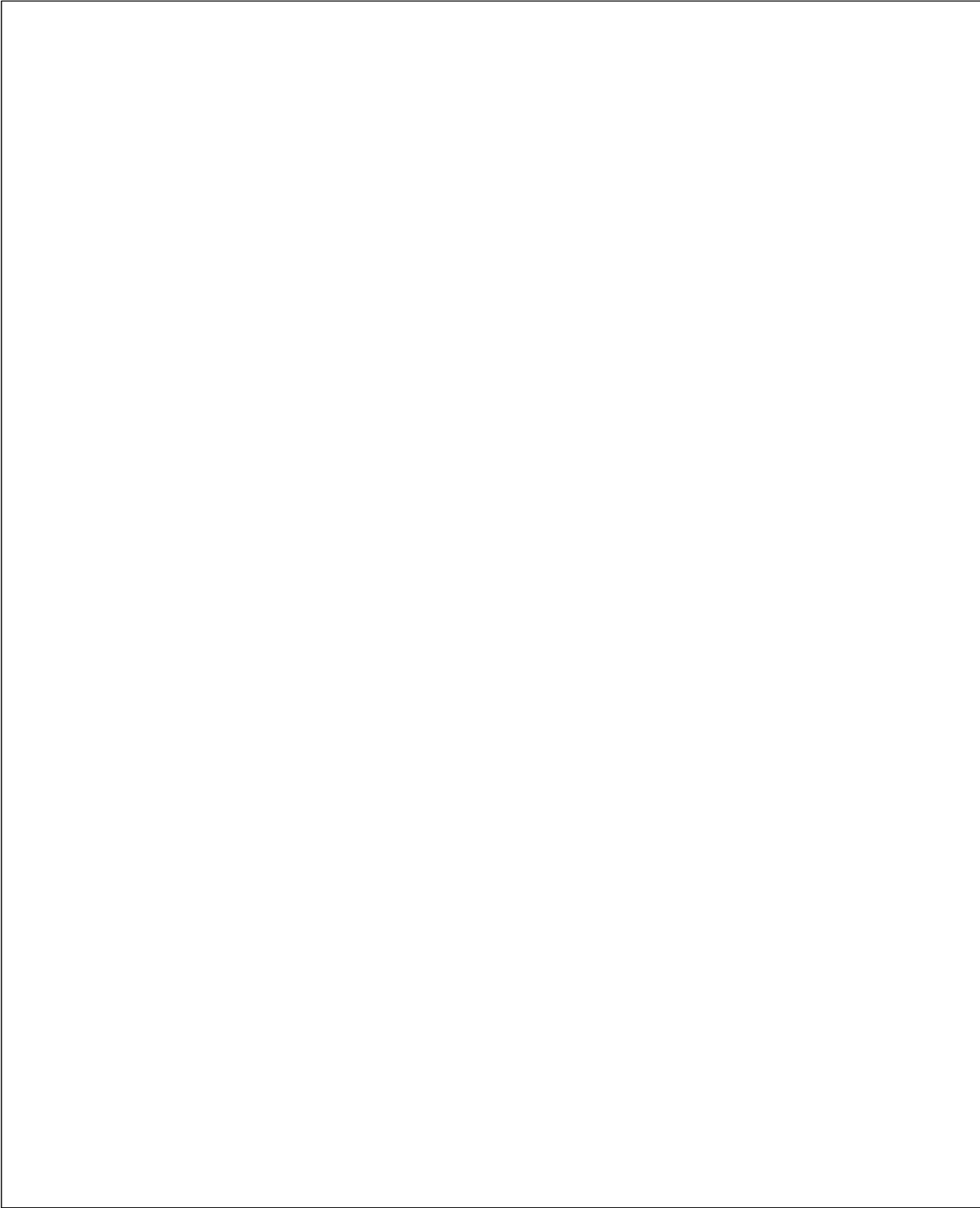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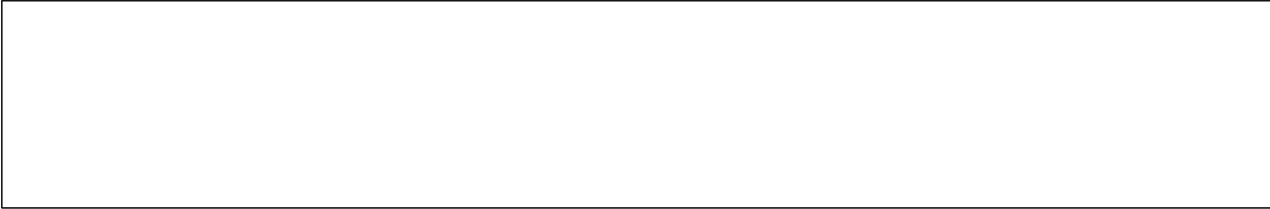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식의 다양한 맛과 풍요, 아늑하고 건강한 시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택]

